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. 10. 25 선고 2018가단1114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18. 10. 2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 파주시 C 전 1,395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), 2), 3), 4), 1)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ㄷ)부분 지상 세멘 및 파이프조천막지붕 단층 무허가 돈사 1동 338㎡, 같은 도면 표시 5), 6), 7), 8), 5)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ㄴ)부분 지상 세멘 및 파이프조강판지붕 단층 무허가 돈사 부속시설 1동 101.3㎡, 같은 도면 표시 9), 10), 11), 12), 9)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ㄹ)부분 파이프 및 목조강판지붕 단층 무허가 돈사 부속시설 1동 22.5㎡, 같은 도면 표시 13), 14), 15), 16), 13)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ㅍ)부분 파이프 및 목조강판지붕 단층 무허가 돈사 부속시설 1동 3㎡를 각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문병찬

별지